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채우진 의원)

의안 번호	20-40
----------	-------

발의년월일 : 2020. 5.

발 의 자 : 채우진, 강명숙, 권영숙
김기석, 김영미, 김진천
신종갑, 장덕준

1. 제안이유

다양한 환경 현상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마포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 나. 기후변화 대응 기본원칙에 관하여 규정(안 제3조)
- 다. 마포구, 사업자, 구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안 제6조)
- 라.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규정(안 제7조)
- 마. 기후변화영향과 취약성 및 이행상황 평가 등에 관하여 규정
(안 제8조~안제9조)
- 바. 산림사업으로 탄소흡수원 확충을 규정(안 제10조)
- 사. 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안 제11조~안 제12조)

3. 관계법령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제5조

4. 예산조치: 부서 의견 반영

5. 입법예고: 2020. 5. 13. ~ 5. 17.

6. 조례안 : 붙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후변화 대응 기본원칙)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구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 속에 녹색 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사회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기후변화·에너지·자원 문제의 해결, 성장 동력의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3.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 순환을 촉진한다.

제4조(마포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② 구는 온실가스의 감축·흡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변화와 온실가스 배출저감 교육을 통하여 기후변화 대응 시책에 대한 구민의 이해 증진과 지식 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기후변화 대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배출량 등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구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현황과 추진 경과 및 실적

2. 국가전략, 중앙추진계획, 서울특별시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구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관련 분야의 연차별 세부시행계획
4. 시행계획의 이행을 통한 기대효과
5.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기후변화영향 및 취약성 평가) 구청장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대기, 수자원·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취약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이행 상황 점검 및 평가) 구청장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이행사항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산림사업으로 탄소흡수원 확충)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도심 내 녹지 확충과 보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의 탄소 흡수원이 증대되도록 녹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사업) ① 구청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온실가스 감축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책 개발
3. 기후변화 대응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교육
4.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국내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의 교류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2019. 4. 1.] [법률 제16133호, 2018. 12. 31., 타법개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 9.] [서울특별시조례 제7467호, 2020. 1. 9., 일부개정]

제5조(자치구의 책무) ① 자치구는 시의 기후변화시책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치구 기후변화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② 자치구는 기후변화시책의 수립 및 수행을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도록 노력하며 시의 기후변화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